

## 일본, 우유 및 유제품 정의 일부 변경 및 성분 규격 개정 (2024년 3월 19일 시행)



### 우유 및 유제품 성분 규격 개정 및 수출국 위생증명서 첨부 품목 확대 시행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기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발표함. 본 개정안에서는 '상온보존가능품'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변경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함.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발표하였으며, 즉시 시행됨

1. 배경 : 일본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우유, 조제 액상우유 및 우유음료 중 '살균 후에 용기·포장에 무균적으로 충전하여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제품' 및 '용기에 충전 후 멸균처리한 상온보존가능품'의 범주 및 기준을 변경함.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2. 대상 품목 : 우유, 성분조정 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우유, 조제 액상우유 및 우유음료 중 상온보존가능품

### 3. 상온보존가능품의 규격 및 제조 기준

#### 1) 멸균 후 용기에 무균 충전한 상온보존가능품

- 연속 유동식 가열 살균기로 살균한 후 미리 살균한 용기 포장에 무균적으로 충전한 것

내용	개정 기준	기존 기준
성분 규격	발육 가능한 미생물 음성 (세균수 0, 산도 0.02%이내, 알코올 시험 음성 기준 삭제)	세균수 : 0
		산도 : 0.02% 이내
		알코올 시험 : 음성
제조 방법	미생물을 사멸 시키기에 충분한 효력을 가진 가열살균 방법 또는 제조업자가 미리 정한 방법 (단, 원재료의 가열 살균: 섭씨 120도에서 4분간 가열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받은 살균 열처리를 거쳐 사전 멸균 포장에 무균 충전함
보존 방법	상온을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보존	상온을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보존

## 2) 용기에 충전 후 멸균처리한 상온보존가능품(충전 후 살균제품)

- 우유 등 품목에 대해 보존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 밀봉한 후 가압 가열 살균하여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
- 단, 이미 해당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조제액상우유에 대해서는 본 개정에 따른 변경은 없음

내용	개정 기준	기존 기준
성분 규격	발육 가능한 미생물 음성	(-)
제조 방법	보존성이 있는 용기에 넣어 섭씨 120도에서 4분간 가열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	(-)

## 3) 수출국 정부 증명서 필요

- 기존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상온보존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제출이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본으로 우유 수입 시 수출국의 정부기관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개정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유</li> <li>유제품(버터유, 치즈(가공치즈 제외), 아이스크림 및 관련 제품, 분말유제품, 액상유제품, 유산균음료, 유제품음료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유(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상온보관에 적합한 유제품 제외)</li> <li>유제품(버터유, 치즈(가공치즈 제외), 아이스크림 및 관련 제품, 분말유제품, 액상유제품, 유산균음료, 유제품음료 제외)</li> </ul>

## 4. 시행일 :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단, 2024년 9월 18일까지 유예 기간)

### 일본으로 우유 및 유제품 수출 한국 기업, 변경된 성분 규격과 제조 방법 준수 필요

일본으로 우유 및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일본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9조」를 준수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한국검역당국에서 발급받아 일본의 동물검역소와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위생증명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판매 목적의 식품 수입이 금지됨. 우유 및 유제품의 상온보존가능품, 충전 후 살균제품에 대한 성분 규격과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及び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ついて, 2024.03.19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우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03.27

Chemlinked food, Japan MHLW Revises Regulations for Dairy Products, 2024.03.25